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합53125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용택
변론 종결 2020. 4. 1.
판결 선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37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6.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20. 1. 3.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27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7. 1. 20.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소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7.부터 2019.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8. 피고 B과 보험가입금액 253,000,000원, 보험기간 2017. 2. 17.부터 2019. 2. 16.까지로 정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약정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해당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다. 피고 B은 원고가 발행한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담보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230,000,000원을 변제기 2019. 2.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17. 2. 8.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H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276,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7. 2. 10. D에게 근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여 2017. 2. 13. 도달하였다.

마.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여 2017. 2. 2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2017. 3.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여 2017. 3. 31.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사. 피고 B이 2019. 1. 23.경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5. 2. H에 234,376,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H은 같은 날 이 사건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근질권 양도사실을 피고 C에게 통지하여 2019. 5. 13.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234,37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3.부터 2019.6. 1.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 3.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C는 근질권한도액 내에서 이 사건 근질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질권 실행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구상금 채무와 질권 실행에 따른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27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234,376,3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3.부터 2019. 6. 1.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1. 3.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임차인인 피고 B에게 2018. 9. 8.과 2018. 10. 6.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 4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참조), 피고 C가 근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은 주장 자체로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권소영, 판사 김경준